

5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예산 전용 보고

□ 사업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9조(예산의 전용)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정안전부)
-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(보건복지부 제2020-889호, 2020.12.15.)
-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 예산 전용 계획(시민건강국, '21.11.5.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'21. 11. ~ 12. 31.
- 사업내용: 병상대기자 대상 비대면 의료상담을 위한 앱 플랫폼 사용료 및 의료진 상담료(평일, 주말, 공휴일 08~24시) 지급
- 소요예산: 60,000천원(전액 시비)

□ 예산전용 사유

-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배정 전 대기시간과 배정 후 이송전까지 자가 대기에 따른 환자 불안감 해소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고자 비대면 진료를 시범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

□ 예산전용 내역('21.11.9.)

(단위 : 천원)

정책사업	단위사업	예산과목			예산 현액	변경요구액		변경후 예산액
	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
생활보건 관리 향상	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	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 체계 구축	재료비 (206)	재료비 (01)	3,217,400	-	52,500	3,164,900
	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	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 체계 구축	일반보전금 (301)	기타보상금 (12)	0	52,500	-	52,500

작성 자 : 감염병관리과장 : 송은철 ☎2133-7660 감염병정책팀장 : 김동섭 ☎7662 담당 : 이규동 ☎7677